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12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5. 1.

발의자 : 김도읍 · 김성원 · 홍철호

박덕흠 · 이은재 · 이완영

김영우 · 김진태 · 윤상현

여상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광안대교 선박충돌 사건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및 그 피해가 음주운전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않고 오히려 거대한 선박의 특성상 물적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고, 이에 음주운항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됨.

한편, 「해사안전법」에서 음주운항을 금지하고 위반 시의 벌칙을 정하고 있는데, 현행법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, 음주운항으로 인명사고를 야기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.

이에 음주운항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준하여 처벌함으로써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

심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11제2항 신설).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11의 제목 중 “위험운전”을 “위험운전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「해사안전법」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 기를 조작,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,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의11(<u>위험운전 치사상</u>)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의11(<u>위험운전 등 치사상</u>)</p> <p>① (<u>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</u>)</p> <p>② <u>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「해사안전법」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,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,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</u></p>